

사회

부인 토막살해 경찰 前妻 행방 찾기 중단

이틀만에 수사 종결 '미스터리'

“엽기 범행 단죄 위해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경찰 간부 아내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57) 경위의 16년 전 행방불명된 전처(前妻)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와 가족들의 진술거부 등을 이유로 김 경위 전처에 대한 소재파악 수사를 불과 이틀여 만에 종결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재혼한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경위의 전처인 문모(53)씨에 대한 소재파악 작업을 사실상 종결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아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처인 문씨 역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씨는 지난

1987년 2월께 행방불명된 뒤 1994년 7월께 남구 월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다.

경찰은 그동안 문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내역 ▲건강보험 ▲고용보험 ▲출입국 기록 등을 추적했으나 이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문씨와 김 경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명과 문씨의 친오빠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이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문씨의 행방이 사라진 것이 실령 살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조기 수사 종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문씨가 실종 추정 시점인 1987년 2월, 혹은 주민등록 말소 시점인 1994년 7월께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더라도 각각 2002년 2월과 2009년 7월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문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서둘러 마치려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씨의 사망이나 실종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재파악을 단 이틀 만에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문씨의 실종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경찰인 김 경위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만큼 전처의 실종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김모(35)씨는 “사라진 문씨가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문씨의 행적을 찾는 수사를 이틀 만에 종결했잖느냐”며 “현직 경찰의 신분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자해를 시도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데다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일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서부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휴지를 삼키는 수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현재까지 뇌사상태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은 26일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경위의 병원치료가 중단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신병 확보차원에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老母의 눈물

홀어머니 모시려 귀향한 아들 경운기 사고 숨겨

홀로 지내는 노모(老母)를 편안하게 모시려 귀향한 50대가 경운기에 깔려 숨겨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향 함평군 신평면 동정리에 사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머니(76)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08년

찾지만 불행하게도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그를 발견한 이웃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 애처로운 일은 싸늘하게 식은 이씨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 평소 같으면 아들이 집에 돌아와 모자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도란도란 정담을 나눌 시간이었지만 이날 따라 아들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냄새를 차린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나섰다. 아들이 깔린 채 숨이 멎어가는 아들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다.

병원에 실려갔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경찰에서 “해가 졌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 앞에 나가봤는데 경운기에 깔린 채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이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한 마을주민(65)은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다”며 울먹였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나원침 (8127) 김종두



학동 아파트에 불 2천만원 재산피해

지난 25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A아파트 15층 정모(여·63)씨의 집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 105㎡가 전소되고 2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날 당시 정씨는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딸의 집에 가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미뤄 전기 누전에 의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라이터 켜기와 '정력'이 무슨 상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비아냥 거뒀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서 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5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옆 테이블 손님 박모(여·53)씨에게 라이터 불을 붙여주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은 것을 본 이씨가 “당신이 ‘힘’이 없으니가 불이 안 붙는 것”이라고 말하며 못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이날 아내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중이던 정씨는 경찰에서 “라이터가 켜지지 않은 것이 ‘정력’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비웃었는지 모르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청소년축제 “네 끼를 펼쳐라” 지난 25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광주시 남구청 주최로 열린 ‘청소년 기 한마당 대축제’에 참가한 대준중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북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안전사고 하루 7.5건

지난해 2721건 발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1일 평균 7.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사고 건수는 광주가 1590건, 전남은 1131건으로 모두 2721건이 발생했다. 주말과 휴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평균 7.5건이다.

광주 초등학교는 558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588건과 444건이었으며 전남은 초등 414건, 중·고교가 408건과 308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는 광주 61건, 전남은 40건으로 전국 평균(66건)을 밑돌았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학교

수 대비 사고 건수는 광주(299개교)가 5.3건으로 전국 평균(4.4건)을 웃돈 반면 전남(838개교)은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안전사고 증가율의 경우 전남은 903건에서 1131건으로 25.2%, 광주는 1430건에서 1590건으로 11.2%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돈 받고 교제 거부 땀 반환 벌원 판결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조규현)는 A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법뉴스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지나치다”

광주지법 판결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6일 강모(46)씨 등 고흥과 순천지역 초·중학교 교사 3명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의 행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직 1개월의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권한이 있고, 평가 시기나 방식 등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며 “진단평가 시행은 위한”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난해 3월 31일 자신들이 낸 연가신청이 불허됐음에도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 또는 가족여행 등을 다녀오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해 7월 말 강씨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법 “휴대전화 무단사용 처벌 못한다”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료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줘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자)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 신원 확인 절차

가 없는 휴대전화의 통화·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법 347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연법뉴스

10월에 시작하는 5개월 완성 프로젝트 10월 신규반 특설, 상위권반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통쾌한 편입성공 9월에 시작하라! 34년 연속 대학편입 합격자수 1위 김영편입학원 개강 1차 10월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개강 2차 10월 4일